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1차 교육위원회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시·군구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근거
마련 등 진로교육 체계 정비 〉

■ 김대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345호)

2024. 11.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강대훈

【 목 차 】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대식 의원 등 17인
2. 발의연월일 : 2024. 8. 29.
3. 회부연월일 : 2024. 8.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의 진로교육에 대해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의 장은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진로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 교육부장관은 진로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국가진로교육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교육감은 국가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진로정보 제공, 진로심리검사 등을 수행하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설치·운영 또는 지정할 수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진로체험 시설 등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현재 전국에 223개의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진로체험지원센터는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진로체험 자원을 연계하는 등 지역 내 진로교육 지원 기관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대학의 진로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학이 지역사회의 산업체, 공공기관 등과 연계·협력하기 위한 대학 내 진로교육 협의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법의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시·도진로교육센터로 변경하고,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진로체험을 지원하기 위해 시·군·구에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시·군·구진로체험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진로교육을 지원하는 기관 간 위계 및 체계를 명확하게 하여 시·군·구진로체험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아울러 진로교육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진로교육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에 안 제16조에 따른 시·도진로교육센터 및 안 제18조의2에 따른 시·군·구진로체험지원센터와 연계·협력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제10호 및 제18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대학 내 진로교육협의회 구성·운영 근거 마련

개정안은 대학 내 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안 제14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대학의 진로교육) ①·② (생략) <u><신설></u>	제14조(대학의 진로교육)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대학의 장은 대학의 진로교육을 지원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역사회 단체 및 산업체 등이 참여하는 대학내 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u>

개정안에 따르면 진로교육협의회는 대학의 진로교육을 지원하고 자문하기 위해 구성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지역사회 단체 및 산업체 등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음. 진로교육협의회 구성·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자본을 활용하여 진로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교육부는 지역 내 공공기관, 산업체 등과 연계·협력하여 대학 내 대학생 대상 진로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견 없다는 입장임.

2. 지역진로교육센터 명칭 변경

개정안은 지역진로교육센터의 명칭을 시·도진로교육센터로 변경하고 있음(안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16조(지역진로교육센터) ① 교육감은 국가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진로정보 제공,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제공,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진로체험 운영·지원 등을 수행하는 <u>지역진로교육센터</u> 를 설치·운영하거나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u>시·도진로교육센터</u>) ① - ----- ----- ----- ----- ----- <u>시·도진로교육</u> <u>센터</u> ----- ----- -.
② 제1항에 따른 <u>지역진로교육센터</u> 의 구성·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② ----- <u>시·도진로교육</u> <u>센터</u> ----- ----- -----.

현행법 제15조1)는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진로교육 지원을 위해

1) 「진로교육법」

제15조(국가진로교육센터) ① 교육부장관은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진로교육센터(이하 “국가진로교육센터”라 한다)로 운영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진로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진로교육의 목표 및 성취기준 개발
2. 진로정보망 구축·운영
3. 진로심리검사 개발
4. 진로상담 지원

“국가진로교육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같은 법 제16조²⁾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법 제16조에 따라 전국에서 설치·운영 중인 “지역진로교육센터”는 17개인데, 현재 모든 지역진로교육센터가 각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지정·운영되고 있음.

개정안에 따라 그 명칭을 ‘지역’에서 ‘시·도’로 변경할 경우 보다 직관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개정안 제18조의2에 따라 시·군·구진로체험지원센터를 설치할 경우 국가 단위 지원기관(국가진로교육센터)과 광역자치단체 단위 지원기관(시·도진로교육센터), 기초자치단체 단위 지원기관(시·군·구진로체험지원센터) 간 체계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교육부 역시 현행법의 ‘지역’ 표현을 ‘시·도’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개정안에 이견이 없다는 입장임.

-
5.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6.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7. 진로전담교사 교육
 8. 진로교육 현황조사 및 평가
 9. 진로교육에 관한 국제 교류·협력
 10. 그 밖에 진로교육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2) 「진로교육법」

제16조(지역진로교육센터) ① 교육감은 국가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진로정보 제공,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제공,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진로체험 운영·지원 등을 수행하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시·군·구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개정안은 시·군·구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전담기관 지정·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u>제18조의2(시·군·구진로체험지원센터) ①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시·도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시·군·구의 실정에 맞는 진로정보제공,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제공,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진로체험 운영·지원 등을 수행하는 시·군·구진로체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시·군·구진로체험지원센터의 구성·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u>

개정안에 따른 “시·군·구진로체험지원센터”는 시·군·구의 실정에 맞는 진로정보제공,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제공,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진로체험 운영·지원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교육감 또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거나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제안이유에서 밝힌 것과 같이 법 제20조제2항³⁾은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진로체험 시설 등을 설치·운영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기준 총 219개의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원센터가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위하여는 법적 근거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시·도별 시·군·구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현황 ('24.7. 기준) >

(단위: 개)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교육청 직영	-	-	5	-	-	-	-	1	3	1	-	-	14	13	19	12	1	69
지자체 직영	6	1	-	5	-	-	-	-	9	-	-	-	-	-	-	1	-	27
직영 센터 수	6	1	5	5	-	-	-	1	12	1	-	-	14	13	19	13	1	92
교육청 위탁	-	-	-	1	-	3	-	-	2	17	10	14	-	8	3	4	1	65
지자체 위탁	19	15	-	4	2	1	5	-	17	-	-	-	-	1	-	1	-	61
위탁 센터 수	19	15	-	5	2	4	5	-	19	17	10	14	-	9	3	5	1	128
센터 수	25	16	5	10	2	4	5	1	31	18	10	14	14	22	22	18	2	219

자료: 교육부

3) 「진로교육법」

제20조(협력 체계 구축 등) ① 교육감은 대학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진로체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진로체험 시설 등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또한 219개의 센터 중 교육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센터가 92개이고 위탁하여 운영되는 센터가 128개인바, 개정안과 같이 직영과 위탁운영의 근거를 모두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교육부 역시 현재 설치·운영되고 있는 진로체험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전문성 및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4. 국가진로교육센터 업무 정비

개정안은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업무에 시·도진로교육센터 및 시·군·구진로체험지원센터와의 연계·협력 업무를 추가하고 있음(안 제15조 제2항제10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5조(국가진로교육센터) ① (생략)	제15조(국가진로교육센터)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진로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u><신설></u>	<u>10. 제16조에 따른 시·도진로교육센터 및 제18조의2에 따른 시·군·구진로체험지원센터와 연계·협력</u>
<u>10.</u> (생략)	<u>11.</u> (현행 제10호와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진로교육 지원 강화를 위하여 국가 단위 지원기관(국가진로교육센터)과 광역자치단체 단위 지원기관(시·도진로교육센터), 기초자치단체 단위 지원기관(시·군·구진로체험지원센터)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국가진로교육센터가 연계·협력을 주도할 필요가 있음.

교육부 역시 국가-시·도-시·군·구로 이어지는 안정적인 진로교육 체계 구축을 위하여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업무에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개정안에 이견이 없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86